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064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.

발 의 자:이상헌·강선우·김교흥

김병욱・김종민・류호정

서영석・양정숙・유정주

이동주 • 이은주 • 장철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반려동물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으나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태풍, 지진, 산불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구조하거나 대피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며, 반려동물이 구조 후 보호조치 중이라 하더라도 관련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임. 그 결과 반려동물을 구조하더라도 동물 구조·보호 비용을 구조자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한 반려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등에게

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, 안 제19 조제1항 등).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⑥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 조치 중인 경우 반려동물의 등록 여부 확인과 소유자에 대한 통보 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15조제7항제7호 중 "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"을 "유실·유기동물, 피학대 동물 및 제14조제5항에 따라 구조된 반려동물"로 한다.

제17조 중 "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"를 "제14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5항"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중 "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"를 "제14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5항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"를 "제14조제1항제1호·제 2호 및 제5항"으로 한다. 제22조제1항 중 "제14조제1항"을 "제14조제1항 및 제5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동물의 구조·보호) ① ~	제14조(동물의 구조·보호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
	<u>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</u>
	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
	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의 보호
	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
	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
	여 제7조에 따라 보호조치를
	<u>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⑥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
	장이 제5항에 따라 반려동물을
	보호조치 중인 경우 반려동물
	의 등록 여부 확인과 소유자에
	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
	<u> 준용한다.</u>
제1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	제1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
등) ① ~ ⑥ (생 략)	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	7
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	
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	

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~ 6. (생 략)
- 7. 특별한 사유 없이 <u>유실·유기</u> <u>동물 및 피학대 동물</u>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
- 8. (생략)
- ⑧ ~ ⑩ (생 략)
- 제17조(공고) 시·도지사와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<u>제14조제1항제1</u> 호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 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시·도 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 -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
 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

<u></u>
1. ~ 6. (현행과 같음)
7 <u>유실·유기</u>
동물, 피학대 동물 및 제14조
제5항에 따라 구조된 반려동
물
8. (현행과 같음)
⑧ ~ ⑩ (현행과 같음)
제17조(공고)
<u>제14조제1항제1</u>
<u>호·제2호 및 제5항</u>
제18조(동물의 반환 등) ①
· 1. 제14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
제5항

중에 있고,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

- 2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19조(보호비용의 부담) ① 시· 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 - ②・③ (생략)
- 제22조(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)
 ①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②·③ (생 략)

2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19조(보호비용의 부담) ①
제14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
<u>5항</u>
<u>.</u>
·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2조(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)
①
①
<u>제14조제1항 및 제5항</u>
.
②·③ (현행과 같음)